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주 의 요 구

제 목 폐수배출사업장 오염도 검사기간 부적정

기 관 명 충청남도, 천안시, 공주시, 보령시, 서산시, 당진시, 청양군

내 용

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당해 시설을 가동하고자 할 때에는 가동시작신고서를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가동시작신고를 한 사업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¹⁾동안 시운전 가동을 하도록 되어 있다.

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따르면 광역시·도지사는 시운전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시·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하도록 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.

1. 충청남도 ○○○○과(폐수배출사업장 오염도 검사기간 부적정)

충청남도 ○○○○과는 천안시 ○○구 ○면 ○○로 000번지 소재 ○○○○(주) 등 23개 폐수배출사업자가 신청한 폐수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설치 허가

1)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: 가동시작일부터 50일(다만, 가동개시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동개시일 부터 70일),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: 가동시작일부터 30일

(신고)에 대하여 허가(수리)하였고, 폐수배출사업자는 폐수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해당시설을 가동하기 위하여 ○○○○과에 가동시작신고 후 30일~70일 법정 기간 동안 시운전가동을 하였다.

따라서 폐수배출사업자로부터 가동시작신고(가동시작일의 변경신고를 포함한다)를 받은 ○○○○과는 시운전가동 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보건환경연구원 등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하도록 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그런데 ○○○○과는 2015. 5월부터 2017. 10월까지 23개 폐수배출사업장에서 시운전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이 경과된 후 최단 4일부터 최장 111일까지 경과하여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상태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였다.

2. 천안시 ○○○○과(폐수배출사업장 오염도 검사기간 부적정)

천안시 ○○○○과는 ○○구 ○○읍 ○○00길 00 소재 (주)○○○○○○○ 등 24개 폐수배출사업자가 신청한 폐수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설치 허가(신고)에 대하여 허가(수리)하였고, 폐수배출사업자는 폐수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해당시설을 가동하기 위하여 환경위생과에 가동시작신고 후 30일~70일 법정 기간 동안 시운전가동을 하였다.

따라서 폐수배출사업자로부터 가동시작신고(가동시작일의 변경신고를 포함한다)를 받은 ○○○○과는 시운전가동 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후

보건환경연구원 등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하도록 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그런데 ○○○○과는 2015. 2월부터 2017. 10월까지 24개 폐수배출사업장에서 시운전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이 경과된 후 최단 4일부터 최장 104일까지 경과하여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상태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였다.

3. 공주시 ○○○○과(폐수배출사업장 오염도 검사기간 부적정)

공주시 ○○○○과는 ○○면 ○○○○○○길 00-00 소재 ○○○○○○○○(주)○○공장 등 24개 폐수배출사업자가 신청한 폐수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설치허가(신고)에 대하여 허가(수리)하였고, 폐수배출사업자는 폐수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해당시설을 가동하기 위하여 ○○○○과에 가동시작신고 후 30일~70일 법정 기간 동안 시운전가동을 하였다.

따라서 폐수배출사업자로부터 가동시작신고(가동시작일의 변경신고를 포함한다)를 받은 ○○○○과는 시운전가동 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보건환경연구원 등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하도록 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그런데 ○○○○과는 2015. 3월부터 2017. 10월까지 11개 폐수배출사업장에서 시운전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이 경과된 후 최단 6일부터 최장 156일까지 경과하여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상태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였다.

4. 보령시 ○○○○과(폐수배출사업장 오염도 검사기간 부적정)

보령시 ○○○○과는 ○○○로 000 소재 ○○○○○○○(주) ○○공장 등 8개 폐수배출사업자가 신청한 폐수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설치 허가(신고)에 대하여 허가(수리)하였고, 폐수배출사업자는 폐수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해당시설을 가동하기 위하여 ○○○○과에 가동시작신고 후 30일~70일 법정 기간 동안 시운전가동을 하였다.

따라서 폐수배출사업자로부터 가동시작신고(가동시작일의 변경신고를 포함한다)를 받은 ○○○○과는 시운전가동 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보건환경연구원 등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하도록 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그런데 ○○○○과는 2014. 11월부터 2017. 10월까지 8개 폐수배출사업장에서 시운전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이 경과된 후 최단 7일부터 최장 104일까지 경과하여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상태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였다.

5. 서산시 ○○○○과(폐수배출사업장 오염도 검사기간 부적정)

서산시 ○○○○과는 ○○동 000-0번지 소재 ○○○○○○ ○○점 등 8개 폐수배출사업자가 신청한 폐수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설치 허가(신고)에 대하여 허가(수리)하였고, 폐수배출사업자는 폐수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해당시설을 가동하기 위하여 ○○○○과에 가동시작신고 후 30일~70일 법정 기간 동안 시운전가동을 하였다.

따라서 폐수배출사업자로부터 가동시작신고(가동시작일의 변경신고를 포함한다)를 받은 ○○○○과는 시운전가동 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보건환경연구원 등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하도록 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그런데 ○○○○과는 2016. 6월부터 2017. 10월까지 8개 폐수배출사업장에서 시운전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이 경과된 후 최단 2일부터 최장 66일까지 경과하여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상태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였다.

6. 당진시 ○○○○과(폐수배출사업장 오염도 검사기간 부적정)

당진시 ○○○○과는 ○○면 ○○○○로 0000 소재 (주)○○○○ ○○○○주 유소 등 22개 폐수배출사업자가 신청한 폐수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설치 허가(신고)에 대하여 허가(수리)하였고, 폐수배출사업자는 폐수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해당시설을 가동하기 위하여 ○○○○과에 가동시작신고 후 30일~70일 법정 기간 동안 시운전가동을 하였다.

따라서 폐수배출사업자로부터 가동시작신고(가동시작일의 변경신고를 포함한다)를 받은 ○○○○과는 시운전가동 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보건환경연구원 등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하도록 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그런데 ○○○○과는 2015. 3월부터 2017. 10월까지 22개 폐수배출사업장에

서 시운전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이 경과된 후 최단 4일부터 최장 279일까지 경과하여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상태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였다.

7. 청양군 ○○○○과(폐수배출사업장 오염도 검사기간 부적정)

청양군 ○○○○과는 ○○면 ○○○○길 00-00 소재 (주)○○○○ 등 6개 폐수배출사업자가 신청한 폐수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설치 허가(신고)에 대하여 허가(수리)하였고, 폐수배출사업자는 폐수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해당시설을 가동하기 위하여 ○○○○과에 가동시작신고 후 30일~70일 법정기간 동안 시운전가동을 하였다.

따라서 폐수배출사업자로부터 가동시작신고(가동시작일의 변경신고를 포함한다)를 받은 ○○○○과는 시운전가동 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보건환경연구원 등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하도록 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그런데 ○○○○과는 2015. 10월부터 2017. 10월까지 6개 폐수배출사업장에서 시운전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이 경과된 후 최단 6일부터 최장 165일까지 경과하여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상태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였다.

조치할 사항 충청남도지사, 천안시장, 공주시장, 보령시장, 서산시장,
 당진시장, 청양군수는

[주의] 폐수배출사업자로부터 가동시작신고를 받고 시운전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수질오염 물질을 채취한 후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바라며,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